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5.

발 의 자 : 박수영 · 이상희 · 김재섭
이종욱 · 강승규 · 이인선
곽규택 · 유용원 · 박성훈
박충권 · 조지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, 우리나라는 ‘1997년 IMF 외환위기’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.

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,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, 외환보유액의 규모·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·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.

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·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, 한국은행의 공공성·투명성(제5조)을 실질적으로 보장

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82조의3 신설 등).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3(외환보유액의 공표) ①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보전과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(이하 “외환보유액”이라 한다)의 규모와 그 자산별 구성내역을 매월 전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할 때에는 국제통화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국제 순위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교기준, 산정방법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함께 밝힐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시기·방법 및 세부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6조의 제목 “(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 등)”을 “(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·공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통계자료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통계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항목·주기 또는 방식을 변경하거나 그 공표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환보유액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말 현재의 외환보유액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은행이 공표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관련 자료는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2조의3(외환보유액의 공표) ①</u>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보전과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(이 하 “외환보유액”이라 한다)의 규모와 그 자산별 구성내역을 매월 전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 로 공표하여야 한다. <u>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</u> 공표할 때에는 국제통화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자료 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외환보 유액 규모와 우리나라 외환보 유액의 국제 순위를 함께 공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교기 준, 산정방법 및 해석상 유의사 항을 함께 밝힐 수 있다.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</u> 사항 외에 공표의 시기·방법 및 세부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86조(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	제86조(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·

<u>등) (생 략)</u>	<u>공표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</u> <u>부분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</u> <u>작성한 통계자료 중 국민경제</u> <u>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</u> <u>의 관심이 높은 통계자료로서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</u> <u>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</u> <u>공표하는 통계자료의 항목·주</u> <u>기 또는 방식을 변경하거나 그</u> <u>공표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</u> <u>그 사유를 미리 공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